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23호서식] <개정 2022. 4. 14.>

자동차안전검사증

제 호		
신청인	제작자명	제작자 등록번호
	대표자명	생년월일(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)
	전화번호	
	주소	
자동차 표시	차명	형식
	차종	규모
	유형	원동기형식
	용도	제원관리번호
	차대번호	모델연도
주요제원	길이(㎜)	원동기출력(ps/rpm)
	너비(㎜)	배기량(cc)
	높이(㎜)	연료의 종류
	승차정원(명)	최대적재량(㎏)
	차량중량(kg)	차량총중량(㎏)

위 자동차는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7조제3항 또는 제37조의2제4항에 따라 자동차안전검사증[최초( ) 계속( )]을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성능시험대행자 또는 제작자 인

210mm X 297mm(일반용지 60g/㎡)